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1일, 염태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염태영)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u>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u> <u><신설></u>	제32조(표준계약서) ① ----- ----- ----- ----- ----- ----- <u>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u> ② <u>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 설></u> <u><신 설></u> 8. (생략) ②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영업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표준계약서를-----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 -----.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10. ~ 14. (생략) ② (생략)	10.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지 아니한 자 11. ~ 15.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일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고 위탁 구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그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를 운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국회 토론회¹⁾에서 영업점과 계약한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배송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동 제도로 인하여 사실

1)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2023.9.6.),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2024.8.14.)

상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부 기사²⁾에서는 동 제도를 택배서비스종사자 과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동법의 목적³⁾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KBS뉴스,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2024.7.4.

“■ 유족·대책위, ‘구조적 문제’ 지적...쿠팡CLS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정 씨가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 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유족과 대책위 측 주장입니다. ... (중 략) ... 또, 배송 마감시간 정책을 운영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던 미스(Done-Miss)’로 분류해 이른바 ‘클렌징’, 배송 구역 회수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던 미스 ‘0.5% 이상’일 경우 구역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2024.7.3.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6862

“서비스연맹은 정 씨의 과로사 배경에 쿠팡의 ‘클렌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클렌징이란 쿠팡이 하청 택배 대리점에게 배송률 미달 등을 이유로 지역의 택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해야 했던 이유는 클렌징에 있다”며 “쿠팡과 영업점의 계약서상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 물량이 0.5%가 넘으면 영업점이 클렌징당해 배송기사도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클렌징을 무기로 과로를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영업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일 뿐 배송기사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쿠팡의 클렌징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송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안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표준계약서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계약에는 위탁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도 존재⁴⁾하는바, 그 대상을 위탁계약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가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라는 표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상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도 어떠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인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탁구역의 명시 등 대통령령에서 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생략)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등록기준
3. 장비 등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u>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u> 를 갖추고 있을 것

한편, 안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행법⁵⁾에 따르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 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등록기준
3. 장비 등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u>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u> 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
하여 반영함.